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 심사보고

1993. 12. 7

교육사회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일

회부일자 : 1993년 11월 3일

다. 상정일자

제9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93.11.11) 상정

제97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93.12.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의사국장 이근수)

가.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제 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하고, 직인의 종류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소위원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함(안제2조)

- 공인의 규격을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번의 길이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인 3.6cm,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인 2.7cm, 충청북도교육위원회소위원회위원장인 2.4cm,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인 2.1cm로 하며,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도록 함.
- 공인의 교부기관을 의사국장으로 하며,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사과장이 재교부 요청토록 함.(안제5조 내지 제6조)
-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이때에는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공인명 또는 인영, 공고기관의장을 명시토록 함.

### 3.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관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나,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91. 6. 19)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의 종류, 규격, 인영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교부, 재교부, 공고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무관리규정 개정과 교육위원회 개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구·자구등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5. 토론 요지 : "별첨 수정안 내용과 같음."

6. 수정안 요지

본 조례안중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제2조 제2항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공인"을 제2항에 명시된 대로 "직인"으로 하며, 또한 제4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를 "다음"이라는 낱말을 삽입시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다음에"로 하며, 별표 공인의 규격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여 표현과 문구의 연결에 정확을 기하고자 함.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나. 수정안조문 대비표 1부.

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12. 7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 1. 수정 이유

본 조례안 중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제2조 제2항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공인"을 제2항에 명시된 대로 "직인"으로 하며, 또한 제4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를 "다음"이라는 낱말을 삽입시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다음에"로 수정하여 표현과 문구의 연결에 정확을 기하고자 함.

## 2. 수정주요 골자

- 가. 제2조(종류)제2항 2호 중 "소위원회 위원장"을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공인"을 "직인"으로 하며,
- 나. 제4조(인영의 내용)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다음에"로 하고,
- 다. 별표(공인의 규격)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2조 제 2항 2호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 2조 제 3항중 "명시된 이외의 공인"을 "명시된 이외의 직인"으로  
하며, "필요한 공인"을 "필요한 직인"으로 한다.

제 4조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다음에"로  
한다.

별표(공인의 규격)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종류)① (생략) ② _____. 1. _____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 회 위원장 3. _____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 인의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 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2조(종류)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1. _____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 위원회 위원장 3. _____ ③ _____ 직 인 _____ _____ 직인 _____ _____.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생략) ② 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에, 직인은 그 직위의 명 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불 인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현행과 같음) ② _____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다음에, _____ _____.
별표(공인의규격) 직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 위원회 위원장	별표(공인의규격) 직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 위원회 위원장